

(별지1)

□ 그간의 추진경위

- 2004. 10. 26 : 부천시의회 의장 면담 및 “부천시 학교급식조례” 제정을 위한 청구서 제출
- 2004. 11. 1 ~ 2005. 1. 31 : 서명 및 청구인명부 작성
- 2005. 1. 31 : 서명 및 청구인명부 접수
 - 법적근거 : 지방자치법 제13조의3(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)
 - 청구 서명인수 : 13,332명
 - 참여단체 : 부천YMCA 등 25개 시민단체
- 2005. 2. 1 : 부천시 학교급식 조례 제정 청구취지 공표
- 2005. 2. 1 ~ 2. 7 :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
 - ▶ 열람 및 공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
- 2005. 2. 16 : 부천시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
 - 청구인명부 중 서명자의 무효결정 : 2,326명

| 서명 유효자 A=(B-C) | 서명자수 (B) | 서명 무효자 (C)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| | 소 계 | 관외 거주자 | 20세 미만자 | 선거권 없는자 | 중 복 서명자 | 기타 확인 불명(오류)자 |
| 11,006 | 13,332 | 2,326 | 236 | 133 | 12 | 678 | 1,267 |

- 청구의 수리 여부 결정 : 청구 수리
 - 청구인명부 열람공고 결과 이의신청이 없으며, 조례 제정 서명 유효자가 11,006명으로 조례제정 연서주민수 11,000명을 초과하여 청구 수리요건을 충족하므로 청구 수리
- 2005. 2. 17 : 부천시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결과 통지
- 2005. 3. 2 ~ 3. 21 : 부천시 학교급식 조례안 입법예고
 - ▶ 입법예고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- 2005. 4. 14 : 부천시학교급식조례제정안 부천시의회 부의 및 통지
- 2005. 5. 16 :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안전상정(제119회 임시회)
 - ▶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차기 회의로 보류
- 2005. 6. 27 ~ 8. 11 : 행정복지위원회 간담회 및 T/F팀 구성 5차에 걸친 회의 개최
 - 2005. 6. 30(제1차) : T/F팀장 선출 및 쟁점 및 논의사항 협의
 - 2005. 7. 21(제2차) : 조례안 쟁점사항 1차 협의
 - 2005. 7. 28(제3차) : 조례안 쟁점사항 및 벤치마킹 협의
 - 2005. 8. 4(제4차) : 우수사례단체 벤치마킹(전남 순천시)
 - 2005. 8. 11(제5차) : 조례안 쟁점사항 최종협의(수정안 작성)
- 2005. 9. 5 : 제121회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결
 - ▶ 시 재정여건상 국·도비 지원없이 전면 시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시 집행부 의견 반영
 - ※ 2005. 9. 9 대법원에서 전라북도 학교급식조례 무효 결정
 - ⇒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협정(GATT)에 위배
- 2005. 9. 6 : 학교급식네트워크 조례안 부결에 따른 규탄 성명 및 조례 제정 촉구를 위한 행동 지속 실천
 - 부천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 항의글 게시(86건)
 - 학교급식조례 제정 촉구 거리행진(부천역 → 시청)
 - 제12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조례 부결 항의 및 제정 촉구를 위한 1인 시위(2005. 10. 11 ~ 10. 21)
- 2005. 11. 3 : 조례 제정계획 수립
 - ▶ 시민단체와의 갈등을 해소하고 법적, 제도적 틀에서 보다 체계적인 학교급식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조례를 제정

○ 2005. 11. 7 ~ 11. 17 : 입법예고

- 부천고등학교에서는 고등학교는 점심뿐만아니라 저녁 식사와 휴무일, 공휴일, 방학기간 중에도 급식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어 현실적으로 직영으로의 전환이 어려우므로 직영급식 확대라는 조항의 수정 또는 삭제를 요구

→ 직영급식 확대는 강제조항이 아니고 T/F팀의 주요내용중 하나로 의견 미반영함

- 학교급식네트워크의 국내생산 문구사용, 완전 무상급식 실시 반영, 교육경비 내 지원 문구 삭제 등 3가지 의견을 제시

→ 국내생산 문구 사용시 행자부의 의견이 순수시비 만으로만 지원이 가능하지 국·도비 지원은 불가하며, 완전무상급식 실시는 학교급식법에 근거한 국·도비 지원이 있어야 가능한 사항이며, 교육경비내에서 지원도 국·도비 지원이 되면 필요한 예산확보가 가능하여 미반영함

○ 2005. 11. 22 : 부천시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 (원안가결)

○ 2005. 11. 23 : 조례안 의회 상정(제123회 정례회)

○ 2005. 12. 14 :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부결